

예산총칙

2024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625,165,150	48,754,955
일반회계	1,425,196,428	42,755,893
특별회계	199,968,722	5,999,062
공기업특별회계	151,704,066	4,551,12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2,998,234	1,589,947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5,308,177	2,559,245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3,397,655	401,930
기타특별회계	48,264,656	1,447,940
강릉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1,870	56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5,740,654	472,220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611,500	108,345
강릉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	17,839,485	535,185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11,071,147	332,134

제 2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24년도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2023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2023회계연도 사고이월 사업은 별첨 "사고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2023회계연도 계속비이월 사업은 별첨 "계속비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7 조 2024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8 조 202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11,316,743천원으로 한다.

제 9 조 2024년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83,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10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 비목 및 채무상환원리금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한다.